

부록 4-가-1

원산지 증명서

원본(제2사본/제3사본)

1. 송하인(수출자의 상호, 주소 및 국가)			참조번호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(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)		
2. 수하인(수입자의 이름, 주소 및 국가)			한국-필리핀 양식 발행국 _____ (국가) (뒷면의 주해 참조)		
3. 운송수단 및 경로(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) 출항일: 선명/편명 등: 하역항:			4. 담당자란 _____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대우 _____ 특혜대우 비부여(자유를 기재합니다) 수입국의 서명권자의 서명		
5. 품목번호	6. 포장의 표시 및 번호	7. 포장의 수량 및 종류, 상품명(적절한 경우, 수량 기재 및 6단위 HS번호를 포함합니다)	8. 원산지 기준 (뒷면의 주해 참조)	9.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(RVC 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FOB를 기재합니다)	10. 송장 번호 및 날짜
11.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, (국가)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의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. (수입국) 장소 및 날짜, 서명권자의 서명			12.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. 장소 및 날짜,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		
13. <input type="checkbox"/> 제3자 송장	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시		

뒷면 주해

1.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협정(KR-PH FTA)에 따른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하는 양 당사국은 한국과 필리핀이다.
2. 조건: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협정(KR-PH FTA)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, 위에 명시된 양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
 - 1)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되어야 한다.
 - 2)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협정(KR-PH FTA) 제4장 제4.15조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 그리고
 - 3)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협정(KR-PH FTA) 제4장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3. 원산지 기준: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,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8란에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.

이 서식의 제11란에 국가명이 기재된 첫 번째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	제8란에 기입
가.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	“WO”
나. 한국-필리핀 자유무역협정(KR-PH FTA) 제4.4조제1항을 충족하는 상품	“RVC 40 또는 CTH”
다.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세번변경 RVC	“CTC”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“RVC” : 예를

<p>[RVC+세번변경]</p> <p>특정 공정</p>	<p>들어, “RVC 45페센트”</p> <p>[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: 예를 들어, “CTH + RVC 40”]</p> <p>“특정 공정”</p>
<p>라. 양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</p>	<p>“PE”</p>

4.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: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이는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 특히 관련이 있다.
5. 상품명: 제7란의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.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.
6. 본선인도가격(FOB):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시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본선인도가격(FOB)을 반영한다.
7.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번호: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.
8. 수출자: 제1란과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.
9. 담당자란: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체크(√)로 표시해야 한다.
10. 제3자 송장: 제3자가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, “제3자 송장” 란에 체크(√)를 표시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가와 같은 정보가 제13란에 기재

된다.

11. 전시: 상품이 다른 국가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송부되고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전시 도중 또는 후에 판매된 경우, 부속서 4-가의 규칙 18에 따라, 제13란의 “전시”에 체크(✓)를 표시하고 그 전시의 이름과 주소를 제2란에 기재해야 할 것이다.